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 9. 4.(금)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목 차

I. 동의안 제출 배경	1
II.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안) 총괄	1
III. 기관별 출연계획 내용	2
(1)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2
(2)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4
(3)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7
(4)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9
(5)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11
IV. 종합 검토 의견	13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2호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 8. 20.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 8. 25.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I. 동의안 제출 배경

-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5개 공공기관(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의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임.

※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출연 규모 등 세부 사항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임.

II.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안) 총괄

(단위 : 천원)

출연기관명	소관부서	2027년(계획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5개 기관)		144,747,391	147,263,400	△2,516,009	△1.71%
경기관광공사	관광산업과	23,376,014	32,256,400	△8,880,386	△27.5%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과	47,219,850	23,882,000	23,337,850	97.7%
한국도자재단	문화정책과	11,731,200	14,738,200	△3,007,000	△20.4%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과	17,627,527	21,310,400	△3,682,873	△17.3%
경기아트센터	예술정책과	44,792,800	55,076,400	△10,283,600	△18.7%

-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5개 공공기관의 출연계획은 **1,447억 4,739만원**으로, 2026년도 기정액 1,472억 6,340만원 대비 **25억 1,601만원(△1.71%) 감소**하였음.

Ⅲ. 기관별 출연계획 내용

(1)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 2027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 233억 7,601만 원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기정액	증감액 (A-B)
	총 계	23,376,014	32,256,400	△8,880,386
운 영 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소계)	10,776,014	10,356,400	419,614
	인건비(기본연봉, 제수당 등)	9,328,010	7,403,230	1,924,780
	관리비(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48,004	2,953,170	△1,505,166
사 업 비	사업비 소계	12,600,000	21,900,000	△9,300,000
	선제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6,330,000	10,920,000	△4,590,000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2,490,000	4,650,000	△2,160,000
	DMZ 평화 생태관광 글로벌 허브 도약	2,650,000	5,100,000	△2,450,000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	1,130,000	1,230,000	△100,000

- **경기관광공사** 2027년 출연 규모는 **233억 7,601만 원**으로, 2026년 기정액 대비 총 **88억 8,039만 원(△27.5%) 감소**하였음.
- **운영비**는 **107억 7,601만 원**으로, 2026년 대비 총 **4억 1,961만 원 (4.1%) 증가**하였음. 인건비 인상률 2.5%와 정원(안중근평화센터 사무원) 1명 증가 요인 외에 기존 관리비로 편성하던 연금 부담금과 평가급의 편성 단위를 인건비로 변경한 사항이 반영되어 인건비는 19억 2,478만 원이 증가하고, 관리비는 15억 517만 원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126억 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분야 사업 45억 9,000만 원 감소,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분야 사업 21억 6,000만 원 감소, DMZ 관광 분야 사업 24억 5,000만 원 감소, 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 분야 사업 1억 원이 감소하여 2026년 대비 총 **93억 원(△42.5%) 감소**하였음.

○ 검토 의견

- 공사의 운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 등을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예산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는 타당함.
- 다만, 사업비의 대폭적인 축소가 공사의 정책 수행 능력과 경기 관광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사업별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감액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핵심 관광정책까지 축소되지 않도록 사업별 감액 사유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비가 전년 대비 42.5%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중근평화센터 개소에 따른 정원 1명 증원이 반영된 만큼, 신규 인력 충원에 앞서 기존 조직 내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규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DMZ 관광 분야는 안중근평화센터 시설 조성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반영되었으나, 해당 감액분을 제외하고도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 2027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 472억 1,985만 원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기정액	증감액 (A-B)
	총 계	47,219,850	23,882,001	23,337,850
관 영 비	소 계	33,689,850	17,719,228	15,970,623
	인건비	22,389,941	10,528,141	11,861,800
	경상경비	11,299,909	7,191,087	4,108,823
	시설비 및 부대비	-	-	-
사 업 비	소 계	13,530,000	6,162,773	7,367,227
	지속가능 경영혁신	-	150,000	△150,000
	소통 기반 디지털 문화행정 고도화	696,000	1,105,000	△409,000
	경기도형 예술활동 성장지원	3,540,000	546,773	2,993,227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1,440,000	-	1,440,000
	문화예술 기반 복합문화거점 운영	2,035,000	1,020,000	1,015,000
	도민 참여형 뮤지엄 운영 활성화	5,619,000	3,241,000	2,378,000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 활성화	200,000	100,000	100,000

- **경기문화재단** 2027년 출연 규모는 **472억 1,985만 원**으로, 2026년 기정액 대비 총 **233억 3,785만 원(97.7%)**이 증가하였음.
- **운영비**는 **336억 8,985만 원**으로 인건비 118억 6,180만 원 증가, 경상경비 41억 882만 원 증가로 2026년 대비 총 **159억 7,062만 원(90.1%)** 증가하였음. 인건비는 상승률과 공무원 명절상여금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음.
- **사업비**는 **135억 3,0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총 **73억 6,723만 원(119.5%)** 증가하였음.
- 지속가능 경영혁신 분야 사업 1억 5,000만 원 감소, 소통 기반 디지털 문화행정 고도화 분야 사업 4억 900만원 감소, 경기도형 예술활동 성장지원 분야 사업 29억 9,323만 원 증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분야 사업 14억 4,000만원 증가, 문화예술 기반 복합문화거점 운영 분야 사업 10억 1,500만 원 증가, 도민 참여형 뮤지엄 운영 활성화 분야 사업 23억 7,800만 원 증가, 박물관·미술관 통합 운영 활성화 분야 사업 1억 원 증가함.
- 다만, 지속가능 경영혁신·소통 기반 디지털 문화행정 고도화 분야 사업은 자체재원 활용에 따라 출연금이 감소하였으며, 경상경비·경기도형 예술활동 성장 지원·지역문화 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문화예술 기반 복합문화 거점 운영·도민 참여형 뮤지엄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26년도에 출연금과 재단 기본재산을 함께 재원으로 활용하던 재원 구조를 2027년에는 출연금 중심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임.

< 2024~2027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사업비
2024	43,432,260	27,418,260	16,014,000
2025	52,098,314	30,224,754	21,873,560
2026	23,882,001	17,719,228	6,162,773
2027(안)	47,219,850	33,689,850	13,530,000

※ 2024~2025년 결산 기준 / 2026년 재단 3회 추경 기준

○ 검토 의견

- 도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 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는 타당함.
- 2027년도 출연 계획은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 제2항제6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027년도 출연금이 전년 대비 97.7%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에 재단의 기본재산 약 300억 원을 운영비와 사업비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출연금 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된 데에 따른 것임. 따라서, 이번 증액은 사업 규모의 확대라기보다 기본재산으로 부담하던 비용을 출연금으로 전환한 자원 조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027년도 출연금을 2025년도와 비교하면 2025년도 출연금 대비 48억 7,846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83억 4,356만 원(△38.1%) 감소한 수준임.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만으로 출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본재산을 포함한 재단의 전체 자원과 실제 사업 규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본재산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단의 재정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이를 출연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도의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조성 목적과 활용 가능 범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과 기본재산 간 적정한 자원 분담 원칙과 중장기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 2027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 117억 3,120만 원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기정액	증감액 (A-B)
	총 계	11,731,200	14,738,200	△3,007,000
기관운영비	소 계	8,721,200	8,721,200	-
	인건비	6,910,000	6,910,000	-
	경상경비	1,811,200	1,811,200	-
	시설비 및 부대비	-	-	-
사업비	소 계	3,010,000	6,017,000	△3,007,000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980,000	-	980,000
	도자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	600,000	530,000	70,000
	공예창작 지원 활성화	500,000	497,000	3,000
	문화시설 운영관리	780,000	1,190,000	△410,000
	2028 비엔날레 개최 준비	150,000	3,800,000	△3,650,000

- **한국도자재단** 2027년 출연 규모는 **117억 3,120만 원**으로, 2026년 기정액 대비 총 **30억 700만 원(△20.4%) 감소**하였음.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7억 2,120만 원**이며, **사업비**는 **30억 1,0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총 **30억 7백만원(△49.9%) 감소**하였음.
-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업 9억 8,000만 원은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였음. 또한, 도자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 사업 7,000만 원 증가, 공예창작 지원 활성화 사업은 300만 원 증가한 반면, 도자공원 개보수 사업 종료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4억 1,000만 원 감소하였고, 비엔날레 미개최 연도에 해당하여 관련 사업비 36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검토 의견

- 도내 도자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 등 재단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재정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는 타당함.
- 2027년도 출연금 감소의 상당 부분은 경기도자비엔날레 미개최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주요 고유목적사업의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재단의 주요 사업이 격년제로 개최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등 행사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예인의 안정적인 창작·판로 지원 등 도자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단의 사업 방향과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단의 기본재산 활용을 축소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향후 도의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기본재산 활용의 축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 2027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 176억 2,753만 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2027년 예산(안)(가)	기정액	증감액 (가-나)
	총 계	17,627,527	21,310,400	△3,682,873
유 형 비	소 계	8,744,527	8,504,400	240,127
	인건비	7,272,907	6,869,267	403,640
	경상경비	1,471,620	1,635,133	△163,513
	시설비 및 부대비	-	-	0
사 업 비	소 계	8,883,000	12,806,000	△3,923,000
	콘텐츠 산업기반 지원	1,834,000	2,515,000	△681,000
	콘텐츠 인재양성	1,303,000	2,560,000	△1,257,000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	1,021,000	1,295,000	△274,000
	지역거점 기반 기업지원	3,905,000	5,011,000	△1,106,000
	재단 경영지원	820,000	1,425,000	△605,000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7년 출연 규모는 **176억 2,753만 원**으로, 2026년 기정액 대비 총 **36억 8,287만 원(△17.3%) 감소**하였음.
- **운영비**는 인건비 4억 364만 원 증가, 경상경비 1억 6,351만 원 감소하여 2026년 대비 총 **2억 4,013만 원(2.8%)**이 **증가**하였음.
- **사업비**는 **88억 8,3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총 **39억 2,300만 원(△30.6%) 감소**하였음.
- 콘텐츠 산업기반 지원 분야 사업 6억 8,100만 원 감소, 콘텐츠 인재양성 분야 사업 12억 5,700만 원 감소,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 분야 사업 2억 7,400만 원 감소, 지역거점 기반 기업 지원 분야 사업 11억 600만 원 감소, 재단 경영지원 분야 사업 6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검토 의견

-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재원의 조성)에 따른 지원 근거는 타당함.
- 다만, 전년 대비 출연금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감액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은 49.1%, 지역거점 기반 기업지원 사업은 22.1% 감소하는 등 주요 사업의 감액 폭이 큰 만큼, 사업성과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인지, 유사 사업의 통·폐합 또는 다른 재원으로의 전환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비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증가하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상응하는 사업량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사업 축소가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 2027년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 447억 9,280만 원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기정액	증감액 (A-B)
총 계		44,792,800	55,076,400	△10,283,600
비 영 요 인	소 계	34,206,800	35,429,880	△1,223,080
	인건비	23,592,000	23,000,000	592,000
	경상경비	9,114,800	10,230,680	△1,115,88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00	2,199,200	△699,200
사 업 비	소 계	10,586,000	19,646,520	△9,060,520
	통합 홍보 사업	720,000	1,528,000	△808,000
	문화예술 교육 사업	340,000	420,000	△80,000
	문화예술 복지 사업	810,000	1,150,000	△340,000
	예술단 공연 사업	2,246,000	2,760,000	△514,000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 사업	1,950,000	3,300,000	△1,350,000
	본부 기획 사업	2,500,000	6,096,520	△3,596,520
	본부 프로젝트 사업	880,000	1,592,000	△712,000
	G아트 사업	900,000	2,400,000	△1,500,000
	국악원 공연 사업	240,000	400,000	△160,000

- **경기아트센터** 2027년 출연 규모는 **447억 9,280만 원**으로, 2026년 기정액 대비 총 **102억 8,360만 원(△18.7%) 감소**하였음.
- **운영비**는 **342억 68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9,200만 원 증가, 경상경비 11억 1,588만 원 감소, 시설 및 부대비 6억 9,920만 원 감소하여 2026년 대비 총 **12억 2,308만 원(△3.5%)**이 **감소**하였음.
- **사업비**는 **105억 8,60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총 **90억 6,052만 원 (△46.1%) 감소**하였음.
- 주요 사업비는 통합 홍보 사업 8억 800만 원, 문화예술 교육 사업 8,000만 원, 문화예술 복지 사업 3억 4,000만 원, 예술단 공연 사업 5억 1,400만 원, 예술단 통합 문화예술 사업 13억 5,000만 원, 본부 기획 사업 35억 9,652만 원, 본부 프로젝트사업 7억 1,200만 원, G아트 사업 15억 원 및 국악원 공연 사업 1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 검토 의견

-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운영 재원 등)에 따른 지원 근거는 타당함.
- 다만, 사업비 전체가 전년 대비 46.1% 감소하는 대규모 감액은 효율화의 범위를 넘어 경기아트센터와 도립 예술단의 본질적인 공연·문화예술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사업비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증가하는 구조로, 현재의 인력 규모에 상응하는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감액 이후에도 아트센터의 핵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종합 검토의견

(1)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 제출은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5개 공공기관의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전 본 동의안 제출은 필요한 절차임.

(2)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의 각 기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3) 출자·출연 사전 의결 성격

- 지방의회의 출자·출연 사전 의결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¹⁾에 따르면,
 - 출자·출연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전 의결하는 것이고,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관련 검토 의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06(2019.1.31.)>

- 출자·출연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이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임.

(4) 종합 의견

- 각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출연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본 동의안은 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출연계획 동의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아트센터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유지 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의 대규모 증액은 2026년도에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부담하던 운영비와 사업비를 2027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자원 구조 변경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임.
- 관광객 유치, 콘텐츠 기업·창작자 지원, 도립 예술단 공연 및 문화 예술 사업 등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직접 연계되는 핵심사업인 만큼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사업 성과와 정책적 중요성, 도민 수혜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기본재산이나 자체 자원의 활용방식 변경으로 출연금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증감만으로 실질적인 재정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출연 계획 동의안 제출 시에는 전년도 출연금뿐 아니라 기관별 자체 자원 및 기본재산 활용액을 포함한 총 자원 현황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기관별 출연금의 단순 증감뿐만 아니라 사업별 성과와 집행률, 사업량의 변화, 재원 구조 변경 여부 및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출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7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임에도,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여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의미로 사료 됨.
-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 공공기관은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자체 수입 확대 및 신규 수익 사업 발굴과 민간 협력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규모의 축소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의 업무량 및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기존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용 인력을 신규 사업 발굴이나 자체 수입 확대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담 당 자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주무관 박한샘
문 의 처	031-8008-755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2.>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출자·출연에 대한 동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운영경비)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